1. 특별건축구역

1.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(법69조)

1) 목적

-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,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

2) 지정대상구역

-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
-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사업구역
- 혁신도시 안 사업구역
- 경제자유구역, 택지개발사업구역, 정비구역
- 보금자리주택지구, 도시개발구역, 재정비촉진구역
- 국제자유도시 안 사업구역
-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
-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
- 관광특구, 문화지구

3) 지정대상구역 제외

-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
- 접도구역 보전산지
-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

도로법 제40조(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)

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, 미관(美觀)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(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)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(接道區域)을 지정할 수 있다

도로법시행령 제39조(접도구역의 지정 등)

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(接道區域)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(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)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24.>

1. 특별건축구역

1.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(법70조)

- 1) 적용 대상 건축물(공공)
 - 국가/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
 -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
 -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관광공사, 한국농어촌공사

2) 적용 대상 건축물(민간)-허가권자 인정 시

- 문화/집회, 판매/운수/의료/교육연구/수련시설 (연면적 2,000m² 이상)
- 운동/업무/숙박/관광휴게/방송통신시설 (연면적 3,000m² 이상)
- 노유자시설 (연면적 2,000m² 이상)
- 공동주택 (100세대 이상,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 포함)
- 종교시설,
- 단독주택 (한옥 10동 이상, 그 외 단독 30동 이상)
- 기타 용도 (1,000m² 이상)

1.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(법71조)

- 1) 지정신청기관
 - 중앙행정기관장, 시/도지사
 - 시장/군수/구청장

2) 지정권자

- 국토교통부장관, 시/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(45일, 민간인 경우) 이내 중앙건축위원회(시/도 건축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

1. 특별건축구역

- 1.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(법72조)
- 1) 건축허가
 -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(특례적용계획서 첨부)
 -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

2) 특례적용계획서

- 기준 완화 적용 요청 사항 (법 5조)
-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(법 71조)
- 적용배제 특례 적용 사유 및 예상효과 등 (법 73조 1항)
-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 성능에 대한 증빙 (법 73조 2항)
-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/관리 등 계획

1. 특별건축구역

1.5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(법73조)

1) 적용 배제 가능한 규정

- 대지의 조경 (법 42조)
- 건폐율, 용적률 (법 56조)
- 대지안의 공지 (법 58조)
- 건축물의 높이 제한 (법 60조)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(법 61조)
- 주택건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(주택법 35조)

2) 완화적용 가능한 규정

- 기준, 성능 등을 완화 가능(건축위원회 인정 시)
 - ·건축물의 피난시설, 용도제한 (법49조)
 - ·건축물의 내화구조, 방화벽 (법 50조)
 - ·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(법 50조의 2)
 - ·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(법 51조)
 - ·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(법 52조)
 - ·실내건축 (법 52조의 2)
 - ·지하층 설치, 건축설비, 승강기 (법 53조, 62조, 64조)
 - ·효율적 에너지관리,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 (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5조)

1. 특별건축구역

1.6 통합적용계획 수립 및 시행(법74조)

1) 통합설계

- 개별건축물마다 적용 않고 전부/일부 통합 적용 가능
- ·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(문화예술진흥법 9조) · 부설주차장 설치(주차장법 19조) · 공원의 설치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

1.7 건축주, 허가권자 등의 의무(법75조, 76조)

1) 원형 유지 의무

- 공사감리자, 시공자, 건축주,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물의 형태, 재료, 색채 등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

2)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

-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부장관, 특별시장/광역시장/도지사에게 제출

3) 건축물의 검사

-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에 대하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

2. 특별가로구역

2.1 특별가로구역 지정(법77조2)

1) 목적

-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

2) 지정대상

- 경관지구
-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
3) 지정권자

- 국토교통부장관, 허가권자

4) 지정절차

- 건축위원회 심의 후 주민 공고(30일 열람)
 - 위치,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
 - ·구역 지정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
 - ·구역 내 건축물 규모 및 용도에 관한 사항
 - ·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
 - ·지붕/외벽 형태, 색채, 건물 배치, 대지 출입구, 조경 위치, 건축선 후퇴공간,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
 - ·그 외 필요사항으로 수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
2.2 특별가로구역 적용 특례

-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기준을 준용

3. 건축협정

3.1 건축협정의 체결(법77조4)

1) 건축협정 의미

- 토지, 건축물 소유자 등이 법의 일정한 완화를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 방안을 행정청과 허가 전에 협약하는 제도 eq.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

2) 건축협정 대상지역

- 지구단위계획지역 (국계법 51조)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(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조, 8조)
- 존치지역 (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조) 도시재생활성화지역 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)
- 도시/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(건축협정 인가권자), 조례로 정한 구역 eg. 인가권자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

3) 건축협정 사항

-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사 건축선,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용도, 높이 및 층수, 지붕 및 외벽의 형태
- 건폐율 및 용적률 담장, 대문, 조경, 주차장 부대시설 위치, 형태
- 차양시설,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 형태
-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건축물 위치, 형태, 부대시설 등 令 정하는 사항

4) 건축협정서 사항

- 건축협정 명칭

- 대상지역 위치 및 범위

- 협정목적 및 내용

- 체결자 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등 운영회 구성시 그 명칭, 성명, 주소, 생년월일 협정유효기간

- 위반 시 제재 사항
- 그 외 필요사항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

3. 건축협정

3.2 건축협정운영회 설립(법77조5)

1) 운영회 설립

-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,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가능
-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운영회 대표자를 선임하고, 규칙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(15일 이내)

3.3 건축협정의 인가(법77조6)

1) 건축협정 인가

- 협정체결자 또는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 작성하여 규칙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음. 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침
-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/군/구 걸치는 경우, 과반(過半)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/군수/ 구청장 협의

3.4 건축협정의 변경(법77조7)

1) 건축협정 변경

-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 시 규칙에 따라 변경인가 받아야 함

3. 건축협정

3.5 건축협정의 관리(법77조6)

1) 건축협정 관리

-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, 관리

3.6 건축협정의 폐지(법77조9)

- 1) 건축협정 폐지
 -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폐지하려는 경우,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칙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
 - 다만, 건축협정특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, 令으로 정한 기간 경과 후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음 (착공신고 후 20년)

3.7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(법77조10)

- 1) 건축협정 효력/승계
 - 체결된 구역에서 건축·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숙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건축협정에 따라야 함
 - 공고된 후 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, 설정 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. 다만,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

3. 건축협정

- 3.8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(법77조13)
- 개별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, 전부/일부 통합 적용
- 1) 맞벽건축인 경우(공동신청 가능)
 - 건축허가 신청/수수료 착공신고
 - 사용승인 건축물의 공사감리
- 2)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
 -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
 -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
 -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
- 3) 건축협정구역 내 규정의 완화 (20% 범위 내 완화)
 - 대지의 조경, 건폐율, 용적율, 높이제한,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
- 3.9 경관협정과의 관계(법77조12)
 - 1) 경관협정과의 관례
 - 소유자 등은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(19조, 20조) 사항을 반영,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
 - 인가 전 심의를 하는 경우, 경관위원회와 공동심의 거침
 - 건축협정 인가 받은 경우, 경관협정 인가 받은 것으로 봄

3. 건축협정

3.10 결합건축(법77조15)

- 용적률을 개별건축물마다 적용 않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한 건축

1) 대상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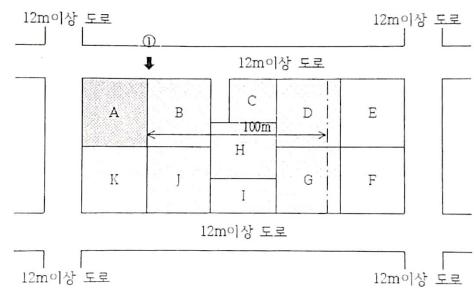
- 상업지역
- 역세권개발지역
-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구역
-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필요 지역 (건축협정구역, 특별건축구역, 리모델링활성화구역, 도시재생활성화구역, 건축자산진흥구역)

2) 대상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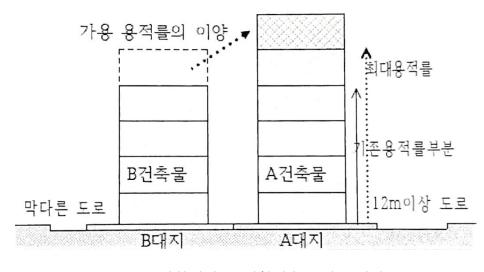
- 동일한 지역 대지간의 최단거리 100m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
- 대상지 모두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일 것

3) 3개 이상 대지 결합건축

- 3개 이상의 대지도 결합건축가능(대지 간 최단거리 500m이내, 12m 이상 도로)
-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
- 빈 집 또는 빈 건축물 대지에 공공이용시설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
-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하는 건축물



A와 결합가능범위(E, F 불가능)



① 방향에서 본 결합건축(용적률 이양)